

#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한온시스템 주식회사



## 제 1 장 총 칙

### 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 2 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 3 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독립이사 후보자를 추천한다.
- ② 위원회는 독립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363조의2 제1항, 제542조의6 제1항·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## 제 2 장 구 성

### 제 4 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독립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 중 사망, 사임 등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 5 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

## 제 3 장 회 의

### 제 6 조 (소집권자)

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 7 조 (소집절차)

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2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 제 8 조 (결의방법)

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회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여 위원회에 출석 및 결의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다.

### 제 9 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독립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독립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제 10 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

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**제 11 조 (통지의무)**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2일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 **제 12 조 (의사록)**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 4 장 보 칙

### 제 13 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재무총괄임원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사무전반을 담당한다.

### 제 14 조 (규정의 개폐)

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## 부 칙 (2014. 02. 25)

### 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4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(2022. 05. 11)

### 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(2025. 02. 28)

### 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 (2026. 07. 31)

### 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